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 內 事 件

實用新案權利範圍確認

〈大法院 第 1 部 判決〉(1982. 5. 25)

裁判長：大法院判事 전 상 석

關與法官： // 이 일 규, 이 성 털, 이 회 창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：손위무(서울 江南구 청담동 시영주택 7단지 2호)
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：이우기(서울 관악구 봉천 4동 525-43)

3. 原審決：特許廳 抗告審判所 1980. 11. 28字, 1979年 抗告審判(당) 第124호 審決

4. 主 文：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
5. 理 由

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1. 記錄을 살피건데 本件 考案을 原審決 說示와 같이 (가)號 考案과는 그 構造 내지 技術의 構成要素가 다르고 또 따라서 그 作用效果도 判異하여 本件 考案이 (가)호 考案의 權利範圍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原判示措置에 首肯이 가나 그 過程에 所論과 같은 審理未盡이나 採證法則違背 등 違法事由가 있다고 할 수 없다.

2. 實用新案權의 權利範圍確認은 技術의 考案의 內容範圍의 確定이라는 內在的 要件의 存否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權利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를 具體的 事實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 確定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實用新案法이 정한 審判節次에서 無效審決의 確定이 있기 前에는 그 登錄된 權利를 適法한 것으로 認定하여야 함은(당원 1968. 11. 26 宣告, 68 후 38判決 參照) 所論과 같으나 原來 實用新案權은 新規性 있는 技術考案에 대하여만 賦與되고 新規性 있는 技術的 效果發生에 有機的으로 結合된것으로 볼 수 있는 公知事由에 대하여서까지 權利範圍를 確定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(당원 1964. 10. 22 宣告 63후45 全體部判決 및 1980. 9. 30 宣告, 78 후 28 判決 各 參照) 原審이 (가)호 考案中の 동체 내의 하부에 燃燒室의 形成은 公知된 것이라 하여

여기에는 實用新案權의 排他的權利가 없다는 趣旨로 斷定한 措置 또한 正當하다고 할 것이며 見解를 달리하는 所論은 理由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關與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參 考

抗告審判

1979年 抗告審判(당) 第124號

抗告審判請求人：손위무

被抗告審判請求人：이우기

主文：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

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함
審 決

1978年 審判 第395號

審判請求人：손위무

被審判請求人：이우기

위 當事者間의 登錄 第10069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確認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：本件 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 審判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